

1. 머리글 : 선거보도 기준의 중요성

선거관련보도가 공정성을 잃거나 정직성을 상실하면 선거자체가 불공평해지고 부정직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오늘의 선거는 언론에 의해서 치러지고 언론의 역할 여하에 따라 선거의 성패 자체가 판가름 날만큼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이다.

따라서 올바른 선거보도 기준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선거관련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일은 선거의 공정성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상적인 윤리규범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준수사항을 상세히 정해놓는 작업은 의미있는 공정보도를 확보해가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상적인 선거보도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실제 선거관련, 보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명쾌한 지침서를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보도관련 기준은 나라마다 상황에 맞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 세계적인 공통기준이 없는지도 모른다. 한 나라에서조차 선거의 종류, 선거시기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만큼 가면성과 다양한 상황변이가 많은 것이 선거보도 기준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보도에 관한 매체를 총괄하는 명문화된 법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단지, 국민투표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등에 부분적으로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선거보도기준의 현황과 실제보도사례는 공식적인 법규사례가 아닌 민간 및 공적 기관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먼저 선거보도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활용된 기준들을 중심으로 방송위원회, 공선험, 언론 3 단체에서 제정 공표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준의 원문 자체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설명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선거보도의 실제사례는 시민운동단체의 모니터 보고서를 비롯하여 방송위원회의 조사분석결과 그리고 언론학자들의 관련 논문을 참고로 하여 특성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의 선거보도기준은 이제 시안을 제정하여 시험적인 활용을 해본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 보도과정에서 나라만 다양한 문제들을 적절히 수용하여 보다 활용성이 높은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II. 방송위원회의 1992년 대통령 선거 방송 기준

1992년 대통령 선거방송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기준은 전문을 비롯하여 일반원칙(6개항),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원칙(7개항),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관한 원칙(4개항), 정책관련 방송 및 여론조사보도에 관한 원칙(4개항), 기타(2개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1992년 11월 5일 방송위원회 규칙 제 73호로 제정된 심의세칙은 위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제 3조), 교양·종교프로그램(제 4조), 연예·오락프로그램(제 5조)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마다의 보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작기술상근형(제 6조)을 비롯하여 사실과 의견을 구분(제 8조)할 것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제 12조)할 것 등을 상세히 정해놓고 있다.

기준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준의 주요방향을 유권자의 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명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후보자들에게 질적, 양적인 모든 면에서 균형되고 공정하게 선거관련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두고 있다.

(1) 일반원칙

선거 기간 동안에 방송사가 유지하여야 할 자세 및 방송되는 모든 선거관련방송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 제시로서 ① 방송사(및 방송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 ② 선거방송은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에 의거하고 ③ 제작에 있어 품위와 정확성을 지킬 것 ④ 매체로서의 방송의 감시기능과 공명 선거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기여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방송사는 방송사가 주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담 및 토론방송 등 선거법에 명시된 선거방송이 적극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방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원칙

편성면에 있어서는 ①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할 것 ② 생활 시간대를 고려하여 많은 시청자들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할 것 ③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지라도 특정 정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 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을 지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 내용면에 있어서는 ④ 교양·종교 또는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방송하지 않도록 하고 ⑤ 특정 후보자가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 하였다.

제작 기술적 측면에서는 ⑥ 카메라 각도, 촬영거리, 화면구성, 음향상태, 조명 등에 있어서도 모든 후보자 또는 대리인에게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뉴스 및 시사보도프로그램에 관한 원칙

뉴스보도에 관해서는 ① 사실보도를 하고 ②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송하도록 하였으며 ③ 순수한 뉴스(bona-fide news)보도의 경우 시간 배분은 방송사의 자율적인 뉴스가치 판단에 따르고 ④ 순수한 뉴스 이외의 선거관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발언시간, 순서, 횟수, 화면 및 녹음구성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 여건상 동등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그 근거를 밝히도록 하였다.

(4) 정책관련 방송 및 여론조사보도에 관한 원칙

방송사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내용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사행사(pseudo-event)나 내용인지를 판단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여론조사 보도시에는 조사결과를 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 결과만 확대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기관, 후원단체, 조사시기와 방법, 표본 크기 및 오차한계, 조사의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투표일에 임박한 여론조사발표는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선거방송기준을 제정 공포하면서 방송위원회는 기준의 적용기간을 법정 선거기간으로 국한하지 않고 선거일 공고일 전이라도 유효하고 정치광고는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거하도록 하였고 협찬은 금지하도록 정하였다. 특히 위의 기준 발표와 동시에 방송위원회는 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에 따라 선거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세척에 근거하여 심의해 나갈 것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 특별심의위원회는 경고 19 건, 주의 8 건 등 모두 25 건의 제재를 결정하였으며, 「'92 대통령선거방송에 관한 권고」, 「'92 대통령선거를 위한 방송매체 적극활동 촉구」 등 2 건의 권고를 방송사에 내린 바 있다.

Ⅲ. 공선험의 대통령 선거보도기준

공명 선거 실천시민운동협의회 (이하 공선험) 산하 언론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보도가 「공정성의 원칙」과 「계도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모든 언론기관과 언론인들이 준수해 주기를 기대하는 기준을 제정 공포 하였다. 2)

1. 선거보도의 두 가지 원칙

공선험의 선거보도기준은 공정성의 원칙과 계도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공정성의 원칙은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도성의 원칙은 다시 「선거환경감시기능」과 「정보제공기능」으로 나누어 적극적인 언론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공정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보도의 기준

프로그램 및 기사 별 선거보도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뉴스보도의 기준

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에서 사실의 목살 또는 은폐, 과장과 축소, 의도적 왜곡은 하지 아니한다.

② 미확인 보도와 추측보도는 하지 아니한다.

③ 보도와 논평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취재원의 의견임을 가장하여 기자개인의 의견을 뉴스보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④ 뉴스보도에서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며, 객관적인 표현을 하도록 한다.

⑤ 선거기간 중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를 신중하게 다룬다. 뉴스보도에 의한 의제설정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공약을 지지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⑥ 선거기간 중 행정부가 행하는 각종 발표, 회견, 각종 자료의 제시 등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의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도하여야 한다.

⑦ 선거기간 중 각종 단체의 설명이나 결의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의도와 배경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절히 보도한다.

⑧ 입후보자들의 대결국면을 부추김으로써 선거를 필요 이상으로 과열시키며, 선거의 진정한 쟁점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큰 경마식 보도(horse-race journalism)는 피한다.

⑨ 특정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내용은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후보자의 자질, 정직성, 도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서 그 출처가 분명할 뿐 아니라 사실확인을 거쳐 진실로 판명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토론, 대담, 인터뷰, 정견발의, 해설, 논평 등에 관한 기준

① 논평과 해설은 정확하고 엄격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논평과 해설에서 가치판단은 정확한 정보는 물론 정당한 논리의 근거를 제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후보자나 후보자의 대리인, 또는 정당의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 대담, 인터뷰, 정견 발표 등은 모든 해당 당사자들에게 동등한 지면과 시간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소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난립한 경우 이 원칙의 적용은 언론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방송의 경우 대담, 토론, 정견 발표는 대통령 선거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토론, 대담, 인터뷰, 정견발표, 해석, 논평 등에서는 질적 균등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토론, 대담, 인터뷰, 해설, 논평 등에 의해 명백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가 반론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항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이나 기사작성시에 기술적 편차가 작동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

⑥~⑧항에서는 기획물,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 등이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방송의 경우는 편성상의 공정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스케치나 낙수 등 특정 후보나 선거 운동과 관련된 가십성 기사 등은 되도록 피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9 항).

(3) 여론조사결과 보도기준

선거보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조사보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① 조사결과를 보도함에 있어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 표본추출방향, 자료수집방법, 질문지의 내용 등을 밝혀주어야 한다.
- ② 여론조사 결과를 화제성과 선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방식을 지양하여야 한다.
- ③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는 단순히 조사결과만 정확히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선거여론조사보도는 1 회성에 그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론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변화 추세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야만 바람직하다

3. 계도성과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보도기준

공선협의 선거보도기준은 단순히 공정성 확보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유권자에게 도움을주는 계도성의 보도기준을 제시 하는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자칫 주관성의 개입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나 보다 발전된 선거보도 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아닐 수 없다.

(1)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정당 및 입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들을 비교 제시하며, 그 차이점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명선거를 위해 관권의 개입, 금품과 향응 등을 통한 주권의 매수행위 등 각종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공명선거 캠페인이 지나치게 부정과 타락선거의 현상 고발에만 치우친 나머지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거나 부정선거가 선거의 주된 이슈로 전환됨으로써 선거의 진정한 쟁점이 묻혀버릴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어떠한 보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중략)

(4) 대규모 유세장의 청중수를 보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청중의 반응을 보도할 때에는 특히 냉정을 기하고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정치적 냉소주의나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이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언론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의제를 설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공선협의 기준은 법개정 및 시민운동단체와의 협력 관계 등을 덧붙이고 있다.

IV. 언론 3 단체의 대통령 선거보도준칙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 단체는 제 14 대 대통령선거보도의 실천적 과제를 「공정한 보도」 「유익한 정보의 제공」 「유권자 계도 및 선거부정감시」 「자기 감시」 등으로 나누어 천명하였다. 3)

1. 공정한 보도

(1) 편견과 이해관계를 배제한다

선거보도는 언론사 경영주 및 언론인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내용과 편집방향 등을 포함하여 전 보도과정에 균형을 유지, 특정후보나 특정정과 편들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사실과 의견을 분리한다. 스트레이트 기사나 현장 스케치 등 객관보도형식의 기사에는 보도자의 판단이나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한다. 사실보도의 외양을 빈 의견 전달을 삼간다.

(3) 모든 취재비용은 소속회사가 부담한다. 취재원의 편의제공은 취재기자의 시각을 편협하게 만들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취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소속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유익한 정보의 제공

(1) 선거보도에서는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쪽의 주장이나 추측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특정 후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는 항상 확인된 정보만을 전달하여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추측 또는 예측보도나 흑색선전의 기사화 등을 거부한다.

(2)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대중집회, 후보자 동정 등에 대한 흥미위주의 중계방송식 보도의 비중을 최대한 줄인다. 각 후보의 선거전략, 선거수행과정 등에 대한 소개도 가급적 억제한다. 대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과제들에 대한 후보 별 입장과 대처방안 등을 비교분석 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3) 쟁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선거 보도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단순비교 소개하는 데에 머물지 않는다. 언론은 비판하는 시각에서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추적 소개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언론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과제중의 한 가지이며 양비론 논란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자각한다.

(4) TV 토론을 활성화한다.

TV 토론은 우리사회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선거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의 하나다.

3. 유권자 참여 및 선거부정 감시

(1) 선거의 의미를 확실히 주지시킨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개개인의 선택이 우리사회 민주화의 진척과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의 참여와 신중한 선택을 계속 촉구한다.

(2) 보도 이외의 교양 오락 프로그램에 신중을 기한다.

교양 오락 프로그램에서 선거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내용은 보도 이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선거문제를 흥미위주로 처리, 정치를 희화화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3) 선거부정을 철저히 감시한다. (중략)

(4) 정부시책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선거기간을 즈음해 발표되는 정부시책 과 각종발표는 그 배경과 의도를 감안하여 특정후보의 전략수단이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모든 취재부서는 정부의 발표가 선거에 켜어 맞춰지는 일이 없는지 감시한다.

이상과 같은 선거 보도준칙의 제정공표와 함께 언론 3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언론의 자기감시역할을 할 것과 이 특별위원회가 각 사의 공정보도활동과 적극 연대할 것 등을 천명하였다

V. 선거관련 신문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14 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신문보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 연구 또는 모니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과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4) 물론 여기서 정리된 내용들은 선거보도기준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발췌 요약되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 조사 결과 자료마다의 구체적인 분석방법, 분석 절차 그리고 분석 들 등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 글에서 필요한 특성과 문제점만 간추려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선거기간 중 신문들은 후보자나 정 당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 해 주는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약분석 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터 인데도 이 번 대선기간 중에는 신문들이 이 점을 가볍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의 선거보도는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비해 방향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전체 분석대상기사 가운데 70% 정도가 방향성을 나타냈고 반면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70% 이상이 중립적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선거보도에 있어서 방향성을 견지하는 기사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논제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선거보도 기준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일보의 경우는 「국민당 금권선거시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반국민당 성향을 강하게 노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도 기사의 방향성 검토와 함께 선거보도의 공정성 기준에 해당되는 논의 과제라고 하겠다.

넷째, 한겨레신문은 일관되게 반민자당 성향의 보도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경우도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거보도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보도에 있어서 신문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문마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성인 셈이다.

다섯째, 대선 기간 중 대부분의 신문들이 특정정치의 전략적 주장에 무분별하게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편파보도가 된 사례가 바로 색깔론에 관한 보도였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시작으로 증폭된 안보이데올로기가 야당과 전국연합의 정책연합을 계기로 색깔론 공방으로 번지자 신문들은 이를 중계방송하듯 보도했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의 기사를 다루는데 신문들이 신중성을 잃은 사례로서 선거보도기준 제정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제시 차원에서 유세보도, 공약보도 그리고 TV 토론에 관한 견해, 선거 전망에 관한 보도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적되었다. 이는 곧 올바른 선거보도기준 중 신문의 계도성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항목으로 삽입되어야 할 내용들인 셈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보도는 우선 몇몇 신문에서 나타났듯이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냈다는 점과 적극적으로 독자를 계도하는 기사게재에 있어서는 소홀했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선거 때마다 지적되어온 갖가지 문제점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선거 보도기준을 명시적으로 위반했거나 확인할 만한 기사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선거보도 관행이나 기사작성 원칙에 있어서의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진전된 선거보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신문보도의 선거관련 취재보도 준칙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VI. 선거관련 방송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대통령 선거 기간중 방송보도의 실제사례는 방송위원회 산하 임시기구였던 특별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실적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⁵⁾

모니터 단체의 결과보고서나 연구자의 분석 결과에 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보다 완벽한 선거보도기준을 제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심의 위원회는 주 3 회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선거방송을 심의하고 특별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중 법정 제재를 제외한 「주의」 및 「경고」 등은 방송위원회상임위원(정·부위원장)이 결정하고, 방송법 제 21 조 제 1 항에 의한 법정 제재는 방송위원회에서의 결하도록 운영되었다.

특별 심의위원회는 총 16 회의 회의 동안 토의사항 5 건(TV 3, 라디오 2)과 안건 62 건(TV 29 건, 라디오 33 건)을 심의하여 제재 25 건(경고 19 건, 주의 6 건), 권고 2 건(대통령선거방송에 관한 권고, 방송매체 적극활동촉구권고) 등을 결정하였다.

특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은 25 건의 제재사유를 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외신인용 10 건,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 5 건, 형평 성 결여 5 건, 출처 불명: 4 건 등이었다.

2 건의 권고 내용도 선거보도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92 대통령 선거방송에 관한 권고」는 각 후보자의 유세 및 동정 보도시 화면구성과 음향상태 등의 질적 균형 그리고 각 당의 불법선거 사례보도시 공정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민원과 사회단체의 의견접수에 따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권고 내용이었다.

그리고 「'92 대통령 선거를 위한 방송매체 적극활동 촉구」는 방송사가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쟁점과 정당의 정책 그리고 후보자의 경력과 견해 등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특별심의위원회에는 선거 기간중(1992.11.16~12. 17) 총 57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사안별로 보면 화면구성이나 음향상태 등의 편파성이 20 건, 불법선거 관련 보도의 불공정성이 8 건, 무소속 · 군소정당 후보에도 동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6 건, 프로그램 중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4 건, 후보자 별 보도순서의 차별이 4 건, TV 토론회 개최촉구가 4 건, 3 당 후보의 보도 시간량 차별지적이 3 건, 그리고 기타사유가 8 건이었다. 시민단체의 모니터 보고서는 2 건의 선거보도 감시 연대회의 보고서와 1 건의 공선험 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선거보도뿐 아니라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선거등에도 활용될 선거보도기준이 보다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도기준과 실제사례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적인 판단기준이나 평가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선거방송보도기준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VII. 맺는 글

선거 자체가 애초에 서로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정파간의 경쟁형태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파가 환영하는 보도기준을 갖기는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질적이든, 양적이든 어떤 기준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닌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선거보도기준을 제정하는 일 자체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사례를 축적해 나가다 보면 바람직한 선거보도 기준의 제정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모든 정파와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선거보도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곧 공정선거로 가는 수준향상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있는 셈이고 그 중에서 언론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서 제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점에서 이상적인 선거보도기준을 제정하는 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셈이다.

주

- 1) 방송위원회(1993), 「제 14 대 대통령 선거방송 분석평가회」, pp. 83~103 참조.
- 2) 공선험 언론대책위원회(1993), 「제 14 대 대통령선거언론보도 평가보고서」, PP. 85~90 참조.
- 3) 한국기자협회(1992), 「올바른 대선보도를 위하여」, 한국기자협회 1992 년 전국간부 세미나 자료집, pp. 10~12 참조.

4) 14 대 대선기간중 신문보도에 관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1993), 「제 14 대 대선보도감시 활동 종합보고」, pp. 7~20
참조.

② 양승주(1993), "14 대 대통령선거와 신문보도", 공선헌 「언론보도평가보고서」, PP.
53~59 참조.

5) 방송위원회(1993), 앞의 평가서, pp. 23~31 참조.

- 서강대 신방과, 동대학원 (박사)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 현재 한국방송개발원방송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